공직선거법위반

[대구지방법원 2015. 2. 6. 2014고합616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준호(기소·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을 벌금 700,000원에 처한다.
- 2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3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- 4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. 12. 19.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